

부속서 8-다
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

정의

1. 이 부속서의 목적상,

입국 및 일시 체류란 영구적 거주를 의도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입국과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.

일반 원칙

2. 이 부속서는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, 당사국들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,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당사국들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.

3.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시민권, 국적,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

일반 의무

4. 각 당사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, 특히,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.

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

5. 당사국들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.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

규율하는 조건은 제8.7조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.

6. 이 부속서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, 한쪽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. 다만, 그 자연인은

가. 허용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당사국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. 그리고

나.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7.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른 서비스의 공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.

8.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,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.

투명성

9. 제1.6조(투명성)에 더하여, 각 당사국은

가.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
나.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, 가능한 경우,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범주의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,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요건에 관한 설명 정보를 준비, 공표 및 이용 가능하게 한다. 그리고

다.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범주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,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10. 제1.6조(투명성)에 더하여, 각 당사국은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

11.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협력

12.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,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 또는 당사국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한다.

분쟁해결

13.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14.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,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(분쟁해결)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.

가.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, 그리고

나.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

15. 다른 쪽 당사자가 재심사 절차를 포함한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 내

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,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, 제14항나호에 언급된 구체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.